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문화정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제 637 호  
 1978. 2. 8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 대 체 보 시 보

제	원	공보	제	상	문화	정보	관	공
								공
								람

차 례

- ◎ 조 례
  - 제 1218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219 호: 서울특별시하천검용로동경수조례중개정조례... 3
- ◎ 규 칙
  - 제 1736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5
- ◎ 고 시
  -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5
  - 제 3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지적승인..... 6
  - 제 3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결정일부변경지적 승인..... 6
  - 제 33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7
  - 제 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 8
  - 제 35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적승인..... 8
  - 제 36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일부변경및결정..... 8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37 호 :	도시계획시설 ( 여객자동차정류장 ) 결정.....	9
제 38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9
제 39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10

◎ 공 고

제 25 호 :	광견병예방을 위한 방견단속공고.....	10
제 26 호 :	공인건축사용승인공고.....	11
제 27 호 :	분노특별청소지역외 계외 ( 비수거 ) 지역공고...	12
제 28 호 :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실시계획공람공고.....	12
제 29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3
제 33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	13
제 34 호 :	외래업소허가일부 규제에 관한 공고.....	17
제 35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판타처분계획공람 공고.....	19
제 36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19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 2. 8

◎ 서울특별시조례제 1218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 공급 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9 조를 제 30 조로 하고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 (가스미터검침등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미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수도검침 업무와 함께 이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 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정용을 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 2. 9

◎ 서울특별시조례제 1219 호

서울특별시 하천정용로등 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정용로등 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단서를 한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회의의 난이도 기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번지 요금 산정기준표에 의한 산정액의 2 배 또는 2 분의 1 의 범위내에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수할 수 있다.

제 3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며 동항중 및 하천공사 (하천관리 행위)를 삭제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용로등을 면제한다.

<p>1. 재해용급복구를 위한 점용등 2. 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당해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점용등</p> <p>제 5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요금은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할 수 있으며 특수 지역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요금</p>	<p>재산소를 설치하여 수기로 분할 징수하게할 수 있다.</p> <p>별표 요금 산정기준표의 구분난중 제 1호, 제 3호의 1, 제 8호 및 제 10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 한다.</p>
<p>※ 별지 ※</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분</p> <p>1. 수차를 제외한 공작물 설치 (국유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구축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를 제외한다.)</p> <p>3. 토지 (하천부차) 의 점용</p> <p>8. 토석, 사력의 채취</p> <p>10.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            정            기            준</p> <p>년점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 시가표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p> <p>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감류농지세 해당농업의 경우는 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감류농지세 과세표준 금액의 100분의 20 나. 울류농지세 해당 농업의 경우는 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울류농지세 과세표준 소득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p> <p>서울특별시외의 전년도 10월말 연재의 토석, 사력, 도매물가의 100분의 15. 다만, 도매물가는 (가공제솜제외)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이불 알 수 없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p>

**규 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환 인

1978. 2. 8

◎ 서울특별시규칙 제 1733 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과징권)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오물처리업자가 일정지역의 청소로 인한 수거수수료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오물처리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 (쓰레기 종별구분 기준)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 건물내에 배출자가 상이한 일반가정, 영업, 다량쓰레기 배출처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를 영업 또는 다량 배출로 본다. 다만, 오물정소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정한 기준미만의 오물이 배출될 경우에는 조목에 정한 종별 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8.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 명륜동 1가 15-3 와룡동 1-1171 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와룡동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B=5m - 8m L=360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및준공예정일 : 78.1. - 78.2.28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조사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3 호(78.1.26)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지적승인조서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2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종로	2	41	15	1,800	세종로	인의동	낙원동 105번지 부근
변경	"	2	41	15	1,800	세종로	인의동	65미터구간 가각확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 일부변경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학교, 도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지적 승인 조서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77. 3.16) 권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2. 2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중학교(신정중학교)	강서구신정동 543-2 의 25 필지	26,060 (7,863평)	신설
신설	학교용지	강서구내발산동 412 의 20 필지	27,000 (8,168평)	신설

나. 도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1		10㎡	180㎡	신정동산 43-7	신정동 546-1	폐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3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15(77.11.29)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조서

하였거 이를 고시한다.  
 1.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2.8  
 서울특별시장

학교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가국민학교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276	대	190평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227	•	426 •	
		-228	•	(1,059평중)992 •	
		-230	•	207 •	
		364-6	•	2,287.8 •	
	산 10	임	(3,600평중) 67.2 •		
	서대문구 북가좌동	68-4	대	95 •	
계		7필		4,258 •	

별첨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 하였거 도시계획법제 12조및제 13조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람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보입니다.  
 1978.2.8  
 서울특별시장

○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대로	3	123	25m	120m	원음동 507 일대	중앙동 5번지(대 3-56)	

별첨 : 도면표시와 잡음(도면생략). 끝.

<p>○ 서울특별시고시제 35 호</p> <p>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o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p>	<p>( '77.3.16 ) 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보입 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주차장	성북구 종암동 116-3 일대	약 992 ㎡ ( 약 300 명 )	

<p>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 끝.</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6 호 .</p> <p>도시계획시설 ( 학교 ) 일부 변경 및 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를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신설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 77.3.16 ) 가.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조서</p>	<p>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2.1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 )	비 고
신설	국민학교 ( 거여국민학교 )	강남구 오금동 204 의 8 필지	12,033 ( 3,640 명 )	기존 학교
기정	중, 고등학교 ( 성정, 여자중, 고 )	서대문구 갈현동 227-5 의 10 필지	47,329 ( 14,317 명 )	
변경	"	서대문구 갈현동 227-5 의 7 필지	40,013 ( 12,104 명 )	
기정	중, 고등학교 ( 남강 중, 고등학교 )	관악구 신림동 산 127-2 일대	37,792 ( 11,432 명 )	
변경	"	"	41,627 ( 12,502 명 )	추가 610명 해제 450명



<p><b>○ 서울특별시고시제 37 호</b>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p>		<p>부 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2.10                  서울특별시장</p>						
<p>○ 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 조서</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잠실동 52의 가, 나	약 503.6평	영동교통				
기정	"	망원동 467-1	2,649 (801.5평)	"				
변경 (폐지)	"	"	"	폐 지				
신설	"	망원동 478-10	1,996 (603.8평)	경성여객				
<p>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p><b>○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b>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호('77.1.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p>		<p>과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2.10                  서울특별시장</p>						
<p>가. 노선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관	중 점	비 고
기정	중로	2	155	15	180	서초동산51-7	서초동391	
변경	"	"	"	"	480	서초동(광19)	"	위치임부 변경및노선연장
<p>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 서울특별시고시제 3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2.10  
 서울특별시장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2	153	15	740	구로동 390-109	구로동 415-3	
기정	소로	2	-	8	70	신당동 50-10	신당동 282-22	약 30
변경	"	"	-	"	100	"	"	연결
신설	중로	1	175	20	2,800	새중로(광1)	충신동(대 2-6)	
폐지	"	2	41	15	1,700	새중로	인의동	중 1-175
기정	"	"	54	"	230	청진동	종로선	편입
변경	"	1	176	20	"	청진동(중 1-175)	종로1가(광로7)	
폐지	"	3	8	12	1,050	인의동(대 3-2)	충신동(2-6)	중 1-175
"	소로	"	"	6	130	훈정동 119	인의동 93	에편입
"	"	"	"	"	70	인의동 107	" 100	"

비첨 ;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5 호**  
**광전병에방을위한방견단속공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전병에 걸린개와 거리

를 배회하는 광전병 미정종개(방견)를 단속코저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1978.2.4

서울특별시장

1. 단속 목적 : 광전병 만연의 미연 방지
2. 단속대상 : 사육하고 있는 축전(이 환전) 및 방전
3. 단속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4. 단속기간 : 1월~12월
5. 단속방법 : 4구(출장소) 별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임함.
6. 기타사항 :
  - 가. 억류된 축전은 구청별로 억류 상황을 공고 함.
  - 나. 억류된 축전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축주는 억류기간중(2일간) 광전병 예방주사 필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함.
  - 다. 억류기간중 반환요구가 없는 축전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박살처분 및 학습연구용으로 제공함.
  - 라. 방전 축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6 조 제 3 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 75 조 제 3 호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 호

공인신조 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 2. 3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일자 1978. 2. 6 부터
2. 인 영

공 인 의 인 영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기금경리관인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기금분임경리관인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기금저출원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 호

분노특별 청소지역의  
제외 ( 비수거 ) 지역공고

오물청소법 제 3 조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

지역이 제외 ( 비수거 ) 되는 분노의 비  
수거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8 년 1 월

서울특별시 장

구 별	동 명	제 외 지 역	비 고
강 남 구	내곡동	전 지역	
•	세곡동	•	
•	일원동	•	
강 시 구	과해동	•	
친호출장소	하일동	•	
•	명일동	•	
동대운 구	신내동	일부지역 ( 21동중 8개동 )	1, 2, 3, 4, 7, 8, 9, 10
도봉 구	공능동	• ( 69동중 13개동 )	1, 2, 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강 남 구	삼선동	• ( 26-1 )	24
•	서초동	• ( 18-5 )	5, 7, 8, 9, 10
•	양재동	• ( 14-1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강 서 구	가양동	• ( 8개동중 2개동 )	5, 6
•	방화동	• 방화 1동 ( 19-5 )	3, 4, 6, 7, 8
•		• 방화 2동 ( 21-6 개 )	1, 2, 15, 16, 18, 21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 호

도시계획사업 ( 하수도 )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76 호 ( 77.8.9 )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 하수도 ) 실  
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  
가옥등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없으므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는 본공고로 갈음한다.

1978. 1.

서울특별시 장

(공합개요)

- 1. 사업장의 위치 : 성동구 중곡동  
250-1~성동구 중곡동 43-5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공사(중곡천간선 복개공사)
- 3. 사업의 규모  
압거  $3 \times 3 \times 3 = 347$   
  - $3.3 \times 2.7 \times 3 = 182$
  - $3.5 \times 2.5 \times 2 = 510$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  
78. 1 ~ 78.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 없음
- 7.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9 호

공인 개각사 용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사 용승인 하얏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외거 공고한다.

1978. 2. .

서울특별시 장

- 1. 사용개시일자 : 1978. 2. 10 부터
- 2. 인 영

공 인 의 인 영

서울특별시립영등포구  
보건소장 의 인

서울특별시립영등포구  
보건소장 제 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 호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 1. 건설부 고사 제 14 호 (72. 6. 25)  
로 묘시원 돈암동~경남어스 중계

<p>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내에 차츰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하고자 이에 공고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니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잠음함.</p> <p>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78. 2. 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공 략 개 요</p> <p>1. 사업장의 위치: 성북구 돈암동 545-14 ~ 정농동 829-4</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돈암동~정농동 버스종점간 도로 확장 공사</p> <p>3. 사업의 규모: 가. 폭 15 m 나. 연장 2,500 m</p> <p>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7.2 ~ 78.2.26</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설명: 다음</p>
---	---

토 지 조 서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돈암동 545-14	대	4	동소문 7 가 85	권영기		
2	돈암동 541-34	대	19	산림동 46	최순섭		
3	돈암동 538-194	대	4	돈암동 410	김중천		
4	돈암동 538-3	도로	29	삼청동 58	이영철		
5	돈암동 538-168	대	16	돈암동 538-1	윤근		
6	돈암동 538-80	대	10.1	돈암동 538-1	윤근		
7	정농동 109-83	대	8	동선 3 가 221	장환		
8	정농동 109-85	대	14	동선 3 가 221	장환		
9	정농동 113-33	대	4	정농동 113-32	정경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	정농동 284-27	대	30	보문7가 34	김현구		
11	정농동 976-95	대	4	정농동 254- 8	김옥영		
12	정농동 285- 8	대	9	정농동 285- 4	윤병호		
13	정농동 285- 7	대	7.7	정농동 285- 3	한영옥		
14	정농동 304- 1	대	0.8	정농동 284-16	민병화		
15	정농동 284- 8	도로	31	정농동 284-16	이영수		
16	정농동 284-22	대	16	정농동 284-16	민병화		
17	정농동 286-10	대	25		한국은행		
18	정농동 290-62	대	0.6	정농동 290-26	왕희창		
19	정농동 295-14	대	4	정농동 295- 8	이성자		
20	정농동 295-13	대	0.9	정농동 295- 7	이순행		
21	정농동 747- 2	대	8	장농2가 193-21	이석건		
22	정농동 772- 2	대	8	정농동 772- 4	은정선		
23	정농동 771-53	대	36	보문6가 42-54	김기현		
24	정농동 775- 2	대	9	제부동 202- 2	장원순		
25	정농동 775- 1	대	14	제부동 202- 2	장원순		
26	정농동 771-52	대	1	김천시황곡동 12	이춘식		
27	정농동 779- 7	대	2	정농동 779- 2	김재환		
28	정농동 779- 6	대	6	정농동 779- 4	서임선		
29	정농동 779- 5	대	0.3	정농동 779- 1	경유진		
30	정농동 786- 3	대	25	회현동1가 19-2	이민재		
31	정농동 786-22	대	1	정농동 786-11	함천교		
32	정농동 792- 3	대	22	정농동 791- 1	이전구		
33	정농동 791- 2	대	109	정농동 791- 1	강종기		
34	정농동 789- 5	대	81	정농동 791- 1	강종기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5	정 능 동 788- 9	대	5	정 능 동 788- 3	이 도 근		
36	정 능 동 788- 8	대	0.8	태평로1가 62-2	서 상 익		
37	정 능 동 992- 8	대	7	대 진 운 수			
38	정 능 동 820-42	대	1	정 능 동 820- 8	노 의 수		
39	정 능 동 820-41	대	1	정 능 동 820- 9	김 영 진		
40	정 능 동 820-40	대	1	정 능 동 820-10	유 복 순		
41	정 능 동 820-43	대	2	정 능 동 820-12	최 용 북		
42	정 능 동 819- 7	대	68	혹적동 29-50	임 정 호		
43	정 능 동 820-39	대	15	정 능 동 402-63	김 능 자 외 1인		
44	정 능 동 820-36	대	12	정 능 동 820	전 색 용		
45	정 능 동 820-35	대	72	삼 선 베 스			
46	정 능 동 820- 2	도로	74	정 능 동 787	김 양 란		
47	정 능 동 820- 3	대	13	정 능 동 820- 3	박 금 용		
48	정 능 동 820-31	대	100	서교동 375-13	이 영 백		
49	정 능 동 820-33	대	11	정 능 동 822-36	이 영 희		
50	정 능 동 822- 36	대	5	정 능 동 822-36	이 영 희		
51	정 능 동 822-45	대	39	삼 선 베 스			
52	정 능 동 822-49	대	3	동선2가 14	전 용 태 외 1인		
53	정 능 동 822-47	대	4	정 능 동 829	권 태 명		
54	정 능 동 829- 4	대	11	정 능 동 289	한 명 수		
55	정 능 동 822- 9	도로	269	정 능 동 822- 1	현 경 수		



○ 서울 특별시 공고 제 34 호

의택업소허가일부규제에관한공고

가정외곽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및 동시행령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의택업소 허가규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8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인)

1. 도심지 5km권내 의택업소 신규 허가 억제 (관광호텔 포함) 단, 77년 12월 31일 현재 기존 업소 (결혼상담소, 장의사)는 전세인 경우 전담주가 천수물 요구 하거나 도시계획상 또는 공공 필요에 의해 철거될 경우는 동일 행정 구역내에서 허가할 허용.

2. 도심지 5km권내 결혼예식업소 영업시설 증설 금지

3. 단, 중력교통 체계와 관련한 도심지 5km권의 결혼예식업소 신규허가시의 주차시설의 기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 계획에 의한 별도 지침에 의한다.

4. 허가 제한지역 일람표 (별첨 일람표 참조)

5. 구별 제한 지역 동수 현황 (별첨 동수 현황 참조)

6. 시행일: 78년 2월 10일

첨부 허가 제한 지역 일람표 (행정동임) 1부.

구별 제한 지역 동수 현황 1부. 끝

허가 제한 지역 일람표 ( 행정동별 )

구별 내역	제 한 지 역
종 로	일 원 ( 단 경창동 제외 )
중 구	일 원
동 대 문	신설동, 용두 2동.
성 동	도심동, 하왕십리 1, 2동, 상왕십리동, 행당 2, 3동, 옥수 1, 2동, 금호 1, 2, 3, 4동.
성 북	성북 1, 2동, 정릉 1, 2, 3동, 돈암 1, 2동, 보문 1, 2동, 안암동, 동선 1, 2동, 삼성 1, 2, 3동, 동소문동.
도 동	해 당 없 음.
서 대 문	홍은 1, 2, 3, 4동, 홍제 1, 2, 3, 4동, 현저동, 명천동, 천연동, 증경로동, 북아현 1, 2, 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 1, 2, 3동, 남가좌 2동.
가 포	아현 1, 2, 3동, 공덕 1, 2동, 신공덕동, 노고산동, 대곡동, 염리동, 도화 1, 2동, 용강동, 신수동, 장천동.
용 산	일 원 ( 단 이촌 1, 2동, 서빙고동 제외 )
영 동 포	해 당 없 음.
관 동 안	.
강 남	.
강 서	.

구 별 계 한 지 역 동 수 현 황					
구별	구분	동 수	제한동수	허가 동수	비 고
	계	369 동	123 동	246 동	등온행정동임
중	문	22	21	1	
중	구	20	20	0	
동	대 문	38	2	36	
성	동	28	12	16	
성	북	32	16	16	
도	봉	29	0	29	
서	대 산	39	21	18	
마	포	22	14	8	
용	산	20	17	3	
영	동 포	40	0	40	
관	악	35	0	35	
강	남	28	0	28	
강	서	16	0	16	

◎서울특별시공고제 35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91 호 (77.4.1)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되고 AID 차관사업으로 시행중인 옥수 1, 2 구역에 대하여
- 2. 도시재개발법 제 42 조와 동법 제 65 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41 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니 재개발사업 옥수 1, 2 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미수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가름한다.

1978.2.10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36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 308 호 (71.6.3) 로 고시된 남산동 3 가 가각 정비사업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 (77.2.4) 로 고시된 을지로입구~광교간 도로확장 사업구간내에 저속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 3.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2.10

서울특별시 장

<공 랑 개 요>

- 1. 사업장위치
  - 가. 남산동 3 가
  - 나. 을지로입구~광교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남산동 3 가 가각정비
  - 나. 을지로입구~광교간 도로확장

- 3. 사업의 규모
  - 가. 남산동 3가 가각정비 ; 폭원 3-11미터  
연장 110 미터
  - 나. 을지로입구~광교간 도로확장  
폭원 1~14미터  
연장 210 미터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5. 착수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 즉시 ~ 78.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사 령

◎ 1978.2.1

도시가스와  
지방행정주사보

신 중 섭

부직을 명함.

도시가스와 근무를 명함.

◎ 1978.2.4

하수시설과  
지방행정주사

김 학 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8.2.8

중 구  
수습사무원 (행정사무원시보)

정 영 배

국가공무원법 제 7 조 3 항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78.2.12

경기도부천시  
지방행정서기

이 상 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동대운군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정 정

78.1.18자 시보 제 634호중 국고  
제 7 호 (오물(쓰레기)특별청소 제외  
바수거지역 지정공고)에 누락부분이  
있어 추가함.

1978.2.8  
서울특별시

쓰레기수거제외지역(동)

구·출장소	동 명	통 명
천 호	길 동	3, 7, 8, 14